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97호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3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 례 제13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조 례 제13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조 례 제13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1
○ 조 례 제13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13
○ 조 례 제13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7
○ 조 례 제13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37
○ 조 례 제13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규 칙

○ 규 칙 제9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43
○ 규 칙 제9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49

훈 령

○ 훈 령 제32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53
-------------	-------------------------------	----

공 고

○ 공고 제2016- 779호	보상에 관해 협의요청 공시송달(능골지구 소3-4 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64
○ 공고 제2016- 796호	공인 신조 공고	65
○ 공고 제2016- 805호	구월도매시장 방법용 CCTV설치 행정예고	69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97호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 공고 제2016-	806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의뢰	72
○ 공고 제2016-	8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서창동 중로1-458호선)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85
○ 공고 제2016-	82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논현택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89
○ 남동구의 회 공고 제2016-	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90
○ 남동구의 회 공고 제2016-	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0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2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107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3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08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09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10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6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11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12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14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	39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16

고 시

○ 고시 제2016-	53호	도로명주소 고시	117
○ 고시 제2016-	54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0
○ 고시 제2016-	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2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5% 이내	28% 이내	2%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율	—	50%이상	50%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6년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 등 직무의 성격에 맞는 인력 운용을 통해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표2)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비율)	1% 이내	7% 이내	<u>25% 이내</u>	35% 이내	28% 이내	<u>4% 이상</u>
조정안(비율)	1% 이내	7% 이내	<u>27% 이내</u>	35% 이내	28% 이내	<u>2% 이상</u>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남동구인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 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협의회는 남동구의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동별 통합방위협의회를 분회로 둘 수 있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방위담당과장”을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관련 업무 담당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의회 심의사항 및 협의회 의 구성, 지원사항을 개정하여 통합방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신설(제2조제6호)
 - 동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개정
 -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위촉직 자격 추가(제3조제2항제9호)
 - 위촉직 위원 임기 및 해촉사항, 각 동별 통합방위협의회 분회신설(제3조제3항~제5항)
- 동 지원본부 본부장 명시(제7조제4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담당부서의 장으로”를 “업무 담당국장으로”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에서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제14조제4항)
 -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 →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제31조제4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폐지이유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남동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남동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며, 남동구의 시가지, 수변,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남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남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 2.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리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 심의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남동구 경관위원회는 남동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

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5.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6조 관련)

1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21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의 건축에 관한 사항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기본방향, 책무 등(제1조~제5조)
- 경관계획의 수립 등(제6조~제8조)
-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평가 등(제9조~제16조)
- 경관협정의 내용, 협정운영회 등 (제17조~제24조)
- 경관심의의 대상(제25조~제26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제27조~제2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관보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2.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 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관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4. 재정적 지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모범사업자로 본다.

[별표 1]

모범사업자 지정시 고려사항(제5조 관련)**1. 공통사항**

- 가. 과거 2년간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실적
- 나. 지방세 완납 여부
- 다. 종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매매업

- 가. 제시된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의 조합 보관 여부
- 나. 제시된 자동차의 상품용 표지 부착 여부
- 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의 광고시 이력 등의 게재 여부
- 라. 매매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책임 준수
- 마.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민원 발생 여부

3. 자동차정비업

- 가.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 나. 고객 대기실 및 편의시설 구비
- 다. 정비 완료시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내용 고지 여부
- 라. 안전정비를 위한 시설·장비(3차원 컴퓨터 차체계측기, 차체프레임 수정기, 스폿트 용접기, 휠얼라인먼트 측정기, 수용성 도장시설 등) 구비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가. 재사용부품 유통 실적
- 나.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 및 고지
- 다. 재사용부품 이력관리 현대화(바코드 이용 등)
- 라.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를 각 600㎡ 이상 설치
- 마. 폐차인수차량의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위한 장비 구비
- 바.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실적

[별표 2]

1)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6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40cm(가로) × 30cm(세로)

나.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

지정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상호 :** _____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조
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노란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관리사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재지정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종질지 80g/m²]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업 종 :
5. 유효기간 :

위 자동차○○업자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천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시달('15. 9. 30.)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투명한 지정과 행정적 지원으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제3조)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제외 대상 사업자에 관한 사항 (제4조)
-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의 삽입 (제5조)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 및 지원 조항의 삽입 (제8조, 제9조)
- 모범사업자 지정시 고려사항 및 표지판 신설 (별표1, 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 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

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및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정비와交通安全 지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개선·정비에 관한 내용 (제3조 및 제4조)
- 交通安全 실태 조사 후交通安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마련 (제5조)
-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또는交通安全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 (제6조)
- 교육시설의 장에게 등·하굣길交通安全지도를 권고 (제7조)
-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8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추진 일정이 50여일 앞당겨져 6월말까지 의회의 심의·승인 완료가 필요하며,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를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되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제3조제1항제1호)
 - 매년 7월 1일 → 매년 6월 7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규칙 제9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기관별·직급별정원(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48	557	20	70	21	280	(4)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945	554	20	70	21	280	(4)
	2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62	32	2	7	2	19	
	행 정	15	13	2				
	의 무	3			3			
	행 정·사회복지	11	6			1	4	
	행 정·공 업	2	2					
	행 정·보 건	6			1		5	
	행 정·환 경	2	2					
	행 정·시 설	13	6			1	6	
	행정·보건·시설	4					4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의무	1			1			
	6급 소계	253	166	8	17	5	57	
	행 정	129	81	7		3	38	
	세 무	7	7					
	전 산	1	1					
	사 회 복 지	5	5					
	숙 기	1		1				
	공 업	3	3					
	녹 지	1	1					
	보 건	3			3			
	환 경	4	4					

	시 설	18	18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세무	10	7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6			1	6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녹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6			3		3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10	8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무운영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5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 소계	329	191	7	23	7	101	(4)
	행 정	115	63	3		3	46	(4)
	세 무	13	13					
	전 산	3	3					
	사회복지	39	8				31	
	숙기	2		2				
	공 업	6	6					
	농 업	2	2					
	녹 지	5	5					
	해양수산	1	1					
	보 건	8			8			

	의료기술	6			6			
	간 호	5			5			
	환 경	9	9					
	시 설	37	37					
	방송통신	3	3					
	간호조무	1			1			
	운전	17	7	1		1	8	
	건축운영	0	0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0	6	1			3	
	행정·사회복지	4				1	3	
	행정·사서	2	2					
	행정·세무	28	18				10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1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264	141	2	18	6	97	
	행 정	110	64	1		3	42	
	세 무	5	4			1		
	전 산	4	4					
	사회복지	48	9				39	
	사서	2	2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6	5			1		
	보 건	11	1		10			
	의료기술	3			3			
	간 호	3			3			
	환 경	4	3			1		
	시 설	20	20					
	방송통신	2	2					
	운전	6			1		5	
	기계운영	2	1	1				
	사무운영	9	5				4	

	행정·세무	10	6				4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사서	0	0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보건·간호	1			1			
	9급 소계	29	18	0	4	1	6	
	행 정	5	1			0	4	
	세 무	3	3					
	전 산	1	1					
	사회복지	6	3			1	2	
	사서	0	0					
	농업	2	2					
	녹 지	2	2					
	보 건	3			3			
	의료기술	1			1			
	시 설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방재안전	3	3					
	연구직 계	1						
	기록연구사	1	1					
	별 정 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서, 6급이하 일부 직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 하여 54만 인구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구민만족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6급 18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6명 [총 정원 변동 없음]

○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						증 감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48	557	20	70	21	280	948	557	20	70	21	280	0
6급 소계	235	148	8	17	5	57	253	166	8	17	5	57	18
행 정	119	71	7		3	38	129	81	7		3	38	10
세무	5	5					7	7					2
사회복지	4	4					5	5					1
환경	3	3					4	4					1
시설	14	14					18	18					4
7급 소계	330	192	7	23	7	101	329	191	7	23	7	101	△1
건축운영	1	1					0	0					△1
8급 소계	265	143	2	18	5	97	264	141	2	18	6	97	△1
행 정	108	63	1		2	42	110	64	1		3	42	2
사서							2	2					2
환경	5	4			1		4	3			1		△1
시 설	23	23					20	20					△3
행정·사서	1	1					0	0					△1
9급 소계	45	33	0	4	2	6	29	18	0	4	1	6	△16
행정	16	11			1	4	5	1			0	4	△11
세무	5	5					3	3					△2
사회복지	7	4			1	2	6	3			1	2	△1
사서	2	2					0	0					△2

※ 6급 정원(1명): 기록연구사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규칙 제9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2(공용차량 표시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차량관리담당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차량관리담당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임차차량 포함)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수사·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차종 · 차형 · 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제5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 ○ 구의회 의장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이상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차량 최단운행기 간이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본청 ○ 의회사무국 ○ 구 소속기관	
	다목적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 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경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동 주민센터	
승합형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중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소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차량 최단운행기 간이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경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화물용	대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차량 최단운행기간 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차량 최단운행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로 한 정)
	중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소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동 주민센터	
	경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화물 자동차를 말한다)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특수용	청소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구급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진료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분뇨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급수·살수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농림방재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이동수리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트럭트렉타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트레일러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렉카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소방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기타 특수차	○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정비 요청 사항과,
- 2015.12.24.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동 장에게 위임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사무 처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화물자동차 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차량 사적사용 금지 조항 신설(제15조의2제1항)
- 공용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 표시 의무 조항 신설(제15조의2제2항)
- 소형화물차 배정대상에 동 주민센터 추가(별표1)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5월 20일

남동구 훈령 제32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 본청 각 실·단·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557	
기 획 예 산 실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6	행정5, 행정·세무1
		8급	5	행정4, 전산1
혁신전략 추진단	일반직	계	8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시설1
		7급	3	행정1, 시설2
		8급	1	행정1
안 전 총 괄 실	일반직	계	22	
		5급	1	행정1
		6급	6	행정3,공업1,행정·시설1,행정·방송통신1
		7급	9	행정2,공업1,시설1,방송통신2,전기운영1, 사무운영1,공업·시설1
		8급	2	행정1, 시설1
		9급	4	방송통신1, 행정·방재안전3
감 사 실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사회·시설1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시설1
홍 보 미디어실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7급	6	행정1, 전산3, 방송통신1, 전화상담운영1
		8급	5	전산3, 방송통신2
		9급	1	전산1
총 무 과	계		28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5	
		2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7	행정7
		7급	7	행정7

	별정직	8급	7	행정7
		9급	0	
		소계	2	
		6급	1	비서요원(수행)
		7급	1	비서요원(기사)
문 화 체 육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행정·시설1
		7급	7	행정5, 시설1, 녹지·시설1
		8급	1	행정1
민 원 봉 사 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3, 사무운영1
		8급	9	행정9
	연구직		1	기록연구사1
청 소 과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행정4, 행정·환경1
		7급	4	행정1, 환경2, 사무운영1
		8급	6	행정4, 환경2
		9급	0	
재 무 과	일반직	계	27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3, 운전1, 기계운영1, 행정·공업·시설2
		7급	12	행정3, 공업2, 시설1, 운전5, 행정·세무1
		8급	6	행정5, 공업1
		9급	0	
세무1과	일반직	계	27	
		5급	1	행정1
		6급	6	세무3, 행정·세무3
		7급	13	세무6, 행정·세무7
		8급	5	세무2, 행정·세무3
		9급	2	세무2
세무2과	일반직	계	26	
		5급	1	행정1
		6급	7	행정1, 세무4, 행정·세무2
		7급	13	세무6, 행정·세무7
		8급	4	세무2, 행정·세무2

		9급	1	세무1
일 자 리 정 책 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4	행정4
		8급	2	행정2
기 업 지 원 과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공업1
		6급	5	행정3, 공업1, 공업·시설1
		7급	4	행정2, 공업2
		8급	2	공업1, 공업·시설1
생 활 경 제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5	행정3, 공업1, 행정·공업1
		7급	3	행정3
		8급	5	행정1, 공업4
농 축 수 산 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해양수산1, 행정·농업·수의2
		7급	5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농업·수의1
		8급	2	농업1, 행정·해양수산1
		9급	2	농업2
환 경 보 전 과	일반직	계	21	
		5급	1	행정·환경1
		6급	9	행정1, 환경4, 사무운영1, 행정·환경2, 행정·공업·환경1
		7급	8	환경7, 공업·환경1
		8급	3	환경1, 공업·환경1, 행정·세무1
복 지 정 책 과	일반직	계	16	
		4급	1	행정1·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3
사 회 보 장 과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사회복지2
		7급	3	사회복지3
		8급	6	행정1, 사회복지5
		9급	1	사회복지1

노 인 장애인과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4, 사회복지1
		7급	6	행정3, 사회복지3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9급	1	사회복지1
가 정 복 지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3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보건1
		9급	1	사회복지1
보 육 정 책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1	행정·사회복지1
평 생 교 육 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4, 행정·사서1
		7급	4	행정2, 행정·사서2
		8급	2	사서2
		9급	1	행정1(임기제-사서)
건 설 과	일반직	계	28	
		4급	1	기술1
		5급	1	행정·시설1
		6급	7	행정1, 시설5, 공업·시설1
		7급	12	행정2, 공업1, 시설7, 운전1, 기계운영1
		8급	7	공업2, 시설4, 사무운영1
건 축 과	일반직	계	23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행정·시설1
		7급	8	행정1, 시설7
		8급	7	사회복지1, 시설5, 사무운영1
		9급	1	시설1
도 시 관 리 과	일반직	계	21	
		5급	1	행정·시설1
		6급	7	시설5, 행정·시설2
		7급	7	행정1, 시설6

도 시 경 관 과	일반직	8급	6	행정1, 시설4, 사무운영1
		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2, 사무운영1,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사무운영2, 행정·세무1
		8급	5	행정2, 시설1, 사무운영2
공 원 녹 지 과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7급	5	녹지5
		8급	6	행정1, 녹지5
		9급	2	녹지2
교 통 행 정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6	행정1, 시설3, 운전1, 행정·세무1
		8급	4	행정4
자 동 차 관 리 과	일반직	계	23	
		5급	1	행정·공업1
		6급	7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7급	5	행정3, 세무1, 사무운영1
		8급	10	행정9, 기계운영1
		9급	0	
토 지 정 보 과	일반직	계	20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1, 시설3, 행정·시설1
		7급	9	행정1, 시설8
		8급	5	시설5
		9급	0	

[별표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1	
남 동 공 단 지원사업소	일 반 직	계	14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공업·시설1
		7급	5	행정2, 운전1, 공업·시설2
		8급	5	행정2, 세무1, 녹지1, 환경1
		9급	0	
남동다문화 사 업 소	일 반 직	계	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1	행정1
		9급	1	사회복지1

[별표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80	
구월1동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보건1
		6급	3	행정2, 행정·세무1
		7급	8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2, 운전1,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구월2동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1
		8급	6	행정3, 사회복지1,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구월3동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보건1
		6급	3	행정2, 행정·보건1
		7급	6	행정4, 운전1,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구월4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행정복지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세무1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간석1동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보건·시설1
		6급	3	행정2, 행정·보건1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세무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간석2동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보건1
		6급	3	행정2, 행정·세무1
		7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간석3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1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9급	1	행정1
간석4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세무1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만수1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행정복지1), 사회복지2, 운전1, 행정·세무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9급	1	사회복지1
만수2동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공업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1
		8급	6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행정·사회복지2
만수3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만수4동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녹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1
		9급	1	행정1
만수5동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보건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세무1
만수6동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보건·시설1
		6급	3	행정2, 행정·사무운영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1
장 수 서창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1, 운전1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사무운영1
남 촌 도림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보건·시설1
		6급	3	행정2, 행정·복지1
		7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세무1
논현1동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보건1
		6급	3	행정2, 행정·보건1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행정·세무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사회복지1
논현2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7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2, 행정·세무1,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9급		
논 현 고잔동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보건·시설1
		6급	3	행정2, 행정·세무1
		7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사무운영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서, 6급이하 일부 직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 하여 54만 인구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구민만족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청 및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정원 조정(별표1, 별표4)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고
총 계			18	△1	△1	△16	
총	무	과	2		△1	△1	
문	육	화	1		△1		
체	소	과			2	△2	
청	재	무	1			△1	
세	무	1 과	1(세무)			△1	
세	무	2 과	1(세무)			△1	
일	자	리 정 책 과	1		△1		
기	업	지 원 과	1		△1		
환	경	보 전 과	1(환경)		△1		
복	지	정 책 과	1		△1		
사	회	보 장 과			1	△1	
노	인	장 애 인 과	1			△1	
가	정	복 지 과	1		1	△2	
보	육	정 책 과	1			△1	
평	생	교 육 과	1		1	△2	
건		설 과	1(시설)		△1		
건		축 과	1(시설)	△1	△1	1	
도	시	관 리 과	1(시설)		△1		
자	동	차 관 리 과			2	△2	
토	지	정 보 과	1(시설)			△1	
남	동	공 단 지 원 사 업 소			1	△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6-779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 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능골지구 소3-4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6. 5. 16 ~ 2016. 5. 30(14일간)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서 * 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18996-8518-9794	반송	주소불명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6-796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사유

-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도입에 따른 신조

○ 공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16. 5. 23.

○ 신조 공인 수 : 20개

○ 신조 공인명 [구월3동] : 4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구월3동통합민원3)-중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구월3동통합민원3)-형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구월3동장인 (구월3동통합민원3)-종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구월3동장인 (구월3동통합민원3)-횡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 신조 공인명 [구월4동] : 4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구월4동통합민원2)-종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구월4동통합민원2)-횡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구월4동장인 (구월4동통합민원2)-종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구월4동장인 (구월4동통합민원2)-횡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 신조 공인명 [만수1동] : 4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1동통합민원2)-중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1동통합민원2)-횡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만수1동장인 (만수1동통합민원2)-중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만수1동장인 (만수1동통합민원2)-횡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 신조 공인명 [만수4동] : 4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4동통합민원2)-중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만수4동통합민원2)-횡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만수4동장인 (만수4동통합민원2)-중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만수4동장인 (만수4동통합민원2)-형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 신조 공인명 [남촌도림동] : 4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2)-중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2)-형		한글전서체 2.4cm × 2.4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남촌도림동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2)-중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신 조 공 인	남촌도림동장인 (남촌도림동통합민원2)-형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용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 805호

구월도매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구월도매시장 내 화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청 생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구월도매시장 CCTV 설치
- 사업규모 : CCTV설치 13대
- 설치사유 : 화재 및 범죄예방
- 주관부서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5. 19. ~ 2016. 6. 8. (20일간)

5. 설치장소 : 구월도매시장 일원

시장명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구월도매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21번길(구월동) 일원	13	

6. 촬영범위 및 시간

- 구월도매시장 내 상점가 도로, 24시간 연중 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6. 5. 19 ~ 2016. 6. 8)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남동구청(생활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월도매시장 방범용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2-453-6109)

라.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032-453-6072)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구월도매시장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구월도매시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806호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재산(남동구 논현동 764-3)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확인 및 도시계획저촉, 행정상 제한사항 확인 등 각종 공부를 열람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토지) 매각

나.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예정가격(원) 〈최저입찰가〉	비고
1	남동구 논현동 764-3	대	4,157.5	준주거지역	7,202,976,700	

※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감정평가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16. 5. 19.(목) 10:00 ~ 2016. 6. 1.(수) 16:00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현 장 설 명	별도 설명회 없음
개 찰 일 시	2016. 6. 2.(목) 10: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2. 입찰참가 자격

- 가. 모든 사람(내·외국인 및 법인 포함)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일까지 “첨부1”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공동입찰자의 날인 및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에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입찰참가신청서<첨부1>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은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인)/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입찰자는 ‘온비드’를 통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 입찰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온비드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일반입찰(공개경쟁)이며,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다.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라.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공동입찰 각 구성원 포함)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추첨(난수발생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공동입찰 각 구성원 포함)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에서 일괄대체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전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 등이 「외국인 토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토지취득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허가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금전액을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합니다.

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가. **낙찰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물건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현황상태로 매각하며, 공부와 지적상의 하자나,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제한, 기존 점유 사용자와의 분쟁, 실제와의 불일치, 도시계획저촉, 매각재산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및 적치물 등 물건(경계펜스, 쓰레기, 농작물, 산업폐기물 등 포함)의 철거·멸실 및 명도, 취득 후 재산권행사의 불이익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매매계약 체결이후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에서 계약보증금, 원상회복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 없이 반환합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현장 확인, 재산목록, 공부서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치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대금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수속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하고,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전에는 토지사용승락이 불가합니다.
- 사. 낙찰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에 의합니다.
- 자. 기타 물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 입찰공고, 집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032-453-2272 / 김은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온비드 시스템상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여부, 입찰결과 확인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온비드콜센터

(☎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

공 동 입 찰 참 가 신 청 서**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산**

- 공고기관 :
- 공고일자/공고번호 :
- 물건관리번호 :
- 물건명 :

2. 공동입찰자 참가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분(%)	날인

공동입찰 참가신청인 일동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의해 실시하는 귀 기관의 물건 입찰에 위 신청인 중 _____을(를) 대표 입찰자로 선정하여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하며 동 대표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6년 월 일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인)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1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위치도 및 현장사진(논현동 764-3번지)

위 치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공고 제2016-809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서창동 중로1-458호선】 사업
보 상 계 획 열 람 ·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서창동 중로1-458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9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 B=20~29M, L=1,086M
 - 금회보상규모 : 2공구 L=246m 중 일부구간
 • 토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6-9 외 1필지
 • 물 건 : 해당 없음
 ※ 붙임 용지조서 및 지장물(물건)조서 참조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 시(2015. 09. 25.) 부터 2018. 12. 31까지
 마.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 05. 20. ~ 2016. 06. 05.(16일)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관리과 ☎032-453-2982, 032-453-2955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 확인 누락여부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방법 등

- 가. 보 상 시 기 : 별도보상통보(개별통지)
 나. 보 상 방 법 : 개인별 현금 보상원칙(계좌입금)

다. 보상금액 산정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인 청구에 따라 소유권 이전 후 일시불 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보 상 절 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 ⇒ 공탁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아래 서식 참조 구분작성)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16.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대리인은 불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 가.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나.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 다.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라. 미 등기 상태의 실제 토지소유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5, ☎032-453-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목	공 부 (㎡)	편입면적(㎡)		잔여 (㎡)	금회 보상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운연동	136-9	전	586.0		586.0			586.0	인천 연수구 ***로 ** **A, ***동 ***호	서종범			
2	운연동	136-10	전	655.0	655.0			430.0		인천 연수구 ***로 ** **A, ***동 ***호	서종범			
합 계					655.0	586.0		430.0	586.0					

☐ 지 장 물 조 서 : 해당없음

이 의 신 청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이의
내용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 합니다.

2016. . .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고 제2016-82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논현택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논현택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논현택지 주차장
- 사업 규모
 - 토지면적 1,234.3㎡, 연면적 2,463.8㎡, 건축면적 615.9㎡, 주차장 30대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손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7.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	대	1,234.3	1,234.3	손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	근저당권	동***** 조합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23

발의연월일 : 2016. 5 . 18

발 의 자 : 신 동 섭 의원

찬 성 자 : 문종관의원 외 6명

□ 제 안 이 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의(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
(안 제8조)

□ 본 문 : “별 첨”

□ 참 고 자 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5조~제7조, 제9조~제14조, 제33조, 제3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

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신 동 섭 의원 (인)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24

발의연월일 : 2016. 5. 18

발 의 자 : 신 동 섭 의원

찬 성 자 : 임춘원의원 외4명

□ 제안이유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개성공단에 입주기업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업체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경영정상화 지원 및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 명부작성 및 지원 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 본 문 : “별 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단”이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란 본사나 공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단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의원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표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4.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경제 및 남북한 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영정상화 지원) 구청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성공단 입

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되는 경우
2.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8조(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 ① 구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창구 운영
2.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간담회 개최
3.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부 작성 등) 구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부를 작성한다.

제10조(지원 사업 확대) 구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조 및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지원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예산지원

- 구청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제7조 경영정상화 지원)
- 구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8조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

나. 지원협의회 설치

- 구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 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6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안 제7조,안 제8조,안 제6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금,경영안정등을 위한 사항으로 재정수요가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됨

나. 추계 결과

- (1) 경영정상화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016년도 18,750천원(대상기업 5개사 × 3,750천원 = 18,75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됨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9	2022			합계
사업비	18,750	37,500	37,500			93,750

※ 2016년도는 6개월 반영

(2) 맞춤형지원대책 마련 등

- 임금지원사업

- 2016년도 120,000천원(대상기업 5개사×600천원×4개월×10명=120,000천원)
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됨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사업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기술개발, 국내·외 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 2016년도 45,000천원(대상기업 5개사×9백만원×1회=45,0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사업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3) 지원협의회 실비보상

2016년도 7,800천원(위원13명×100천원×6월 = 7,8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됨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사업비	7,800	15,600	15,600	15,600	15,600	70,200

※ 2016년도는 6개월 반영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신동섭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191,550	218,100	218,100	218,100	218,100	1,063,950
개성공단 지원		191,550	218,100	218,100	218,100	218,100	1,063,950
재원 조달		191,550	218,100	218,100	218,100	218,100	1,063,9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91,550	218,100	218,100	218,100	218,100	1,063,950
	지방세	191,550	218,100	218,100	218,100	218,100	1,063,95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2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
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
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5. 16 ~ 2016. 05. 30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1	식품제조 가공업	45	스 폰	박영숙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24번길 4 (구월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일: 2016.05.03
6. 처분사유 : 시설물 열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
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3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05. 3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6. 05. 16. ~ 2016. 05. 3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09-019 9563	(주)칼리오페 동부가	윤*태	논고개로 123번길 35, 5층 501~504,511~513,518~520 호(논현동, 칼리오페)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11.01.	2016.05.31.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6. 0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05. 3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6. 05. 16. ~ 2016. 05. 3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논고-214	해변해물탕	서*화	청능대로 595번길 17(논현동, 107호, 2층전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11.04.	2016.05.31.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6. 0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06. 0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6. 05. 17. ~ 2016. 05. 3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4- 0199131	마당쇠 구이구이 떡조아	조은성	석산로9번길 19, 지1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5.04.	2016.06.01.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2

2016. 05.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6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06. 0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6. 05. 17. ~ 2016. 05. 3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3- 0199582	태평양	최유진	소래역로 12, 지1층 B01,B02,B03호(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5.03.	2016.06.01.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2

2016. 05.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05.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6. 05. 17 ~ 2016. 05. 31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일반음식점	1999-0199664	빅호프	김*관	경인로626번길 16(간석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2)
 - 청문일시 : 2016. 06. 13.(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위생팀 032-453-26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8호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05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아 래 -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6.05.19. ~ 2016.06.03.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 동법 제22조 적용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4. 당사자 및 과태료처분 예정사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위생관리 용역업	(주)경안테크	임*석	경인로 610, 1층 (간석동)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기한 내 납부시 16만원)
위생관리 용역업	하우징 코스메틱	안*양	백범로 475, 2층 203호 (간석동, 샬레오피스텔)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기한 내납부시 16만원)
위생관리 용역업	바이오세상	김*순	경인로524번길 24, 지하1층 제6호(간석동)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기한 내납부시 16만원)
위생관리 용역업	주영 종합관리(주)	최*옥	구월로276번길 17, 4층 (구월동, 대양빌딩)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기한 내납부시 16만원)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역
미용업	아뉴짱	박*자	논고개로123번길 45-1, 3층 302호 일부(논현동, 로얄프라자)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기 내납부시 16만원)

5.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2016.06.03.까지 남동구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담당 유수진 ☎032-453-263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39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05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아 래 -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공고기간 : 2016.05.19. ~ 2016.06.03. (15일간)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 동법 제22조 적용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4. 당사자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위생관리 용역업	㈜나린베스트	이*근	남동대로 935, A동 4층 402호(간석동, 리더스타워)	2015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20만원

5.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6.06.03.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가상계좌납부 가능)

6. 문 의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담당 유수진 ☎032-453-2633)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5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36-1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4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	222-2	인천광역시남동구	백범로40 6번길	36-1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5.1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백범로406번길36-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6- 1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산동	311 외 5필지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수골로	48	2009.11.16	아홉개의 우물이 있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6.5.1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구수골로48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8 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677-6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	65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5.1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남동서로114번길6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65 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1129-2 1	인천광역시남동구	미래로	13-1	2009.11.16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6.5.1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미래로13-1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3- 1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	30-8	인천광역시남동구	석산로20 7번길	12-13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5.1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석산로207번길12-1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 13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4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48	2016.5.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6-54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05.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28	40	보조간선	485 (360)	광3-14	대2-75	일반	-	인고2002-31호 (2002.12.31.)	
기정	대로	2	75	30	보조간선	2,830 (1,949)	대2-44	대2-1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기정	대로	3	98	25	보조간선	529	대2-75	중1-302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대로	3	99	25	보조간선	515	대2-75	중1-302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1	309	23	보조간선	362	중1-310	대2-75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중로	1	310	22	보조간선	129	대3-99	완6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1	294	20 (15)	집산	486.5 (470)	광3-28	소1-9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간선	2,287	광3-34	소1-20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변경	중로	1	302	20	보조간선	2,287	광3-34	소1-20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일부 폭원 변경
기정	중로	1	303	20	보조간선	1,770 (1,468)	중1-304	대3-75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1	304	20	보조간선	557	대2-75	중1-302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1	305	20	보조간선	731 (543)	중2-434	대2-75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1	306	20	보조간선	416	대3-98	중1-304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27	15	집산	979	중1-303	중2-430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28	15	집산	139	중1-303	중2-427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29	15	집산	259	중1-303	중2-427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30	15	집산	341	중1-302	중1-303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31	15	집산	121	중1-303	근4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32	15	집산	106	중1-303	근1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33	15	집산	107	중1-305	근1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34	15	집산	599	대2-75	중1-305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35	15	집산	48	중3-232	중2-434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48	15	집산	240	문화시설1	대3-75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49	15	집산	85	광3-28	중2-434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중로	2	453	15	특수	42	광3-28	중2-435	보행자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중로	2	454	15	집산	72	중2-457	소1-12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2	455	15	집산	238	중2-449	중2-434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중로	2	456	15	집산	55	중2-455	소1-12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중로	2	457	15	집산	45	중2-455	중2-454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중로	3	227	12	집산	19	대2-75	쓰레기 집하장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3	232	12	집산	210	중2-435	중2-449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중로	3	236	12	집산	191	중1-310	중1-310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소로	3	237	12	집산	126	중1-310	대3-99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소로	1	1	10	국지	303	중2-432	중2-432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2	10	국지	292	중2-432	중2-432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3	10	특수	236	대2-75	중1-303	보행자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4	10	특수	117	중1-303	근4	보행자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5	10	국지	168	소1-7	소1-7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6	10	국지	36	소1-5	소1-7	일반	-	인고2006-133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006.08.07.)	
기정	소로	1	7	10	국지	299	소1-5	중1-303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8	10	특수	361	대2-75	중1-305	일반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9	10	특수	335	중1-305	중2-434	보행자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10	10	특수	92	중2-434	중2-456	보행자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12	10	특수	55	중2-456	중2-454	보행자	-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18	중1-303	소1-5	일반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소로	1	19	10	특수	42	광3-28	중3-232	보행자	-	인고2008-331호 (2008.12.22.)	
기정	소로	1	20	10	특수	30	중2-232	중2-434	보행자	-	인고2008-331호 (2008.12.2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중로 1-302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소래어시장일원 보행안전성 및 통행성 제고를 위한 보행로 추가확보를 위하여 선형 변경	

○ 주차장(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 광장(변경 없음)

○ 녹지(변경 없음)

○ 공원(변경)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고잔공원	근린공원	고잔동 983	141,092	1966.08.31.	
기정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38-8	561,641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56-5	34,712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55-7	10,633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63-2	216,686	인고2006-133호 (2006.08.07.)	
변경	제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63-2	216,492	인고2006-133호 (2006.08.07.)	감)194m²
기정	제1호 소공원	소공원	논현동 751-6	6,446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65-4	1,517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57-2	1,923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3호	어린이공원	논현동 773-4	1,513	인고2006-133호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어린이공원				(2006.08.07.)	
기정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74-4	1,591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5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55-5	1,689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6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49-5	3,231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7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40-3	1,531	인고2006-133호 (2006.08.07.)	
기정	제8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39-5	8,511	인고2006-133호 (2006.08.0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제4호 근린공원	- 일부 제척 - 당초 216,686㎡ - 변경 216,492㎡ - 감)194㎡	일부 공원기능 상실구간 제척 후 도로로 편입	

다) 유통·공급시설 : 변경 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 변경 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 변경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지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고 제2016-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2호선】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또는 건설과(☎453-272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6. 5.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65-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2호선)
 - － 명 칭 : 고잔동 365-1번지 일원(소2-2호선) 도로 개설공사
- 사업 규모
 - － 소로2-2호선 B=8.0m, L=500.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도로시설팀)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7.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365-19	장	54	54	김○○		
2	310-11	도	633	633	오○○		
3	365-16	장	12	12	한신○○		
4	365-18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5	365-17	장	6	6	주식회사코리아○ ○		
6	364-9	도	116	116	백○○		미등기
7	363-8	도	5	5	인천광역시 남동구		
8	364-11	묘	4	4	정○○		
9	586-57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10	364-10	대	1	1	백○○		
11	312-15	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12	362-15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13	362-12	도	2	2	국	국토교통부	
14	353-4	도	9	9	인천광역시 남동구		
15	359-17	도	13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16	359-18	대	3	3	정도○○		
17	359-21	장	3	3	최○○		
18	359-20	도	482	482	오○○		
19	341-27	도	100	100	오○○		
20	295-3	도	14,520	242	인천광역시		
21	341-20	도	1	0.4	인천광역시		
22	341-24	도	85	85	오○○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3	341-22	도	426	426	오○○		
24	476-3	도	416	312	오○○		
25	476-13	도	132	132	오○○		
26	462-21	도	3	3	박○○		미등기
27	457-12	도	1,211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28	358-12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29	341-23	도	9	9	오○○		
30	339-18	대	7	7	백○○		
31	339-19	대	27	27	오○○		
32	339-16	대	7	7	민○○		
33	339-17	대	8	8	이○○		
34	339-2	도	43	43	서○○		
35	586-59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36	477-8	도	103	103	오○○		
37	477-7	도	11	7	인천광역시 남동구		
38	477-2	도	45	45	오○○		

☐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군(시)	면(읍)	리(동)					성 명	주 소
1	남동구		고잔동	365-17	담 장	블록(H=2.0m)	24.0㎡	(주)코리아○ ○	
					대 문	철 재	1식		
2	남동구		고잔동	364-9 586-57	계근대(저울)	35ton	1식	백○○	
					담 장	함석(H=2.0m)	31.0㎡		
					대 문	철재함석	1식		
3	남동구		고잔동	364-9 364-4	가 옥	블록, 함석	72.4㎡	백○○	
					창 고	샌드위치판넬 함석	5.8㎡		
					담 장	함석(H=2.0m)	28.0㎡		
					담 장	콘크리트조립식 (H=1.4m)	67.2㎡		
					대 문	철 재	1식		
					살구나무	20년생	1주		
					감나무	30년생	1주		
					유실수	15년생	1주		
					동백나무	30년생	1주		
4	남동구		고잔동	312-15	가 옥	벽돌, 함석	46.1㎡	이○○	
5	남동구		고잔동	312-15	가 옥	블록, 기와	59.4㎡	장○○	
					마 트	블록, 기와	12.6㎡		
					마 트	블록, 함석	17.6㎡		
					미용실	블록, 함석	14.4㎡		
					창 고	블록, 함석	20.7㎡		
					담 장	블록(H=1.6m)	8.8㎡		
					담 장	콘크리트조립식 (H=1.6m)	25.9㎡		
					간 판	철재 및 회전식	2식		
					영업권	(미니마트, 영미용실)	2식		
					측백나무	30년생	1주		
					단풍나무	30년생	1주		
					감나무	25년생	2주		
6	남동구		고잔동	358-2	미용 실	블록, 함석	32.0㎡	고잔○○	
					영업권		1식		
7	남동구		고잔동	341-23	화장실	블록, 슬라브	2.7㎡	오○○	
					담 장	블록(H=1.6m)	20.0㎡		
					대 문	철 재	1식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군(시)	면(읍)	리(동)					성 명	주 소
8	남동구		고잔동	358-12	사무실	블록, 함석	56.6㎡	최○○	
					식 당	블록, 함석	111.8㎡		
					창 고	컨테이너	18.0㎡		
					부 역	블록, 함석	11.3㎡		
					냉장고	샌드위치판넬	8.8㎡		
					담 장	블록(H=1.8m)	37.8㎡		
					대 문	목 재	1식		
					간 판	철 재	1식		
					영업권	(새집영양탕)	1식		
9	남동구		고잔동	339-22	담 장	함석(H=2.4m)	18.0㎡	백○○	
					담 장	웬스(H=2.0m)	2.2㎡		
					대 문	철 재	1식		
10	남동구		고잔동	341-24	가 옥	블록, 기와	77.8㎡		
					가 옥	블록, 스테트	11.1㎡		
					가 옥	블록, 스테트	13.3㎡		
					가 추	목재, 스테트	3.6㎡		
					화장실	블록, 스테트	3식		
					간이화장실	이동식(FRP) 1인용	1식		
					담 장	블록(H=1.8m)	45.9㎡		
					대 문	철 재	1식		
11	남동구		고잔동	341-24	가 옥	블록, 기와 함석	81.5㎡	방○○	
					가 옥	블록, 스테트 함석	37.1㎡		
					가 추	함 석	9.9㎡		
					화장실	블록, 슬라브	7.2㎡		
					대 문	철 재	1식		
12	남동구		고잔동	341-24	가 옥	벽돌, 아스팔트청글	119.9㎡	방○○	
					가 옥	벽돌, 슬라브	16.2㎡		
					슈 퍼	벽돌, 아스팔트청글	28.5㎡		
					등나무	30년생	1주		
					영업권	(형제슈퍼)	1식		
13	남동구		고잔동	339-16 341-22	울타리	웬스(H=1.5m)	27.8㎡	민○○	
					목과나무	25년생	1주		
					은행나무	35년생	1주		
					무궁화	35년생	4주		
					관상수	10년생	15주		
					장 미	10년생	3주		
					수 국	20년생	1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	소 유 자	
	군(시)	면 (읍)	리(동)					성 명	주 소
14	남동구		고잔동	476-3	담 장	블록(H=1.2m)	4.2㎡	경○○	
15	남동구		고잔동	476-5	창 고	샌드위치판넬 함석	19.9㎡	김○○	
					화장실	블록, 슬라브	1.2㎡		
					담 장	샌드위치판넬	8.4㎡		
					산수유	10년생	1주		
					사철나무	20년생	4주		
					두릅나무	8년생	2주		
					엄나무	15년생	4주		
					오동나무	30년생	1주		